2022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세부기준 변경사항

('21.9.6기준)

□경위

- 지난 '20.12월 개정 고시*된 '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'의 세부 평가기준 마련 등
 - *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-998호('21.1.1.시행)

□ 세부기준 요약

	평가분야	변경내용 및 사유
가점	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	 배점 상향 (+3점 → 5점) 평가기준 이전과 동일
	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	● 평가 세부기준 마련- 우대 대상업체 명확화, 제출서류 등 세부 평가기준 마련
배점	재무지원 실적	◉ 재무지원 인정유형 다양화

※ 각 평가항목별 세부 변경내용은 붙임 참조

붙임1 항목별 세부평가기준

🚺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실적 (만점기준 상향)

□ 개정 내용

개정전(2021년 평가)	개정후(2022년 평가)
가점 +3점	가점 +5점

□ 2022년 평가기준

산정 방법	평 가 기 준			
[건경당립	대기업	가점	중소기업	가점
② 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	70%이상	<u>+5.0</u>	60%이상	<u>+5.0</u>
│ ─ ○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	60%~70%미만	<u>+4.0</u>	50%~60%미만	<u>+4.0</u>
	50%~60%미만	<u>+3.0</u>	40%~50%미만	<u>+3.0</u>
 ④ 시스템 활용 임금·대금지급 개월수 평균	40%~50%미만	<u>+2.0</u>	30%~40%미만	<u>+2.0</u>
③ 시스템 활용 임금·대금지급 현장의	30%~40%미만	<u>+1.0</u>	20%~30%미만	<u>+1.0</u>
총공사개월수 평균	20%~30%미만	<u>+0.5</u>	10%~20%미만	<u>+0.5</u>

1) '전체 민간공사 현장수'의 판단기준 (기존과 동일)

-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협회에 제출한 모든 민간공사 중 당년도에 기성실적이 발생한 현장수를 합산하여 산정
- 단, 원도급 공사금액이 5천만원 미만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내인 현장,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해 공사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현장은 제외
- ※ 자기건설공사 현장 중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현장은 포함

2) '시스템 활용 민간공사 현장수'의 파단기준 (기존과 동일)

- 1)에 따른 '민간공사 현장' 중 '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'을 활용하여 현장 내 건설근로자 및 자재·장비업자에게 임금 및 자재·장비대금을 모두 지급한 현장수를 합산하여 산정
- 1)에 따른 동일현장내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모든 하도급공사에서 동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임금 및 자재·장비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인정
 - ※ 다만 일부 하도급공사에 대해 동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별 소명하고, 사유를 검토하여 합리적 경우에 한하여 인정

- 임금의 경우 매월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, 지연 또는 일괄지급은 불인정
-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건설근로 자 임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구성사도 동일하게 적용
- 3) '시스템 활용. 임금·대금지급 현장의 총공사개월수 평균'의 판단기준 (기존과 동일)
 - 2)에 따른 '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공사현장'별 '공사개월 수*'를 모두 누계한 후 그 평균값으로 산정
 - * 건설공사 실적신고시 제출한 자료의 계약연월, 준공(예정)연월을 기준으로 계산 (최대 12개월)
- 4) '시스템 활용, 임금·대금지급 현장의 개월수 평균'의 판단기준 (기존과 동일)
 - 3)에 따른 공사개월 중 '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실제 임금 및 자재 장비대금이 지급된 대상월(기성월) 수'를 합산하여 그 평균값으로 산정
 - ※ 단,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대상월의 임금 및 자재·장비대금이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
 - 동일현장내 다수의 하도급공사에서 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이 최초로 지급된 하도급공사를 시작월로 하고, 마지막 으로 지급된 하도급공사를 종료월로 각각 적용하여 개월수 산정

사실확인용 제출서류

- ①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화면캡처 출력물 (종합건설사업자명, 현장명, 임금지급 대상월, 월별지급일자 등 포함) ※ 신청사가 동의한 경우 시스템 운영사를 통해 협회가 직접 확인 가능
- © 현장별 월별 퇴직공제 납입 확인서 또는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(현장근로자수 확인용)
 - ⇒ 현장별로 ①, ○을 1set로 제출

2 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과의 협력실적 (신설)

□ 개정 내용

개정전(2021년 평가)	개정후(2022년 평가)
_	가점 +3점

□ 2022년 평가기준

산정방법	점수
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*과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한 경우	<u>+3</u>

1) '100대 건설혁신 선도기업'의 판단기준

○ 국토교통부에서 선정*한 '건설혁신 선도 중소건설기업' 중 상호협력평가 가점이 지원되는 '국내시장 진출분야' 및 '스타분야'지원업체로 선정된 업체 *당년도에 건설혁신 선도기업으로써 효력이 있는 업체

2) 공동도급 수행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 등 협력한 경우'의 판단기준

- 당년도 협력업자 등록 후 해당 협력업자와 아래 형태로 협력한 경우,
- ② 당년도에 해당 협력업자와 신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해당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
- ① 당년도에 해당 협력업자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협력업자의 당년도 기성실적이 최소 1백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인정
-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을 기준으로 판단
- 자기건설공사에 대해 협력업자와 상기 형태의 협력관계가 발생한 경우 인정
- 공동이행방식인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협력실적은 구성사에게도 동일하게 인정

사실확인용 제출서류

- 해당 협력업자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 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
- © 해당 협력업자와의 전자세금계산서
- ⇒ 현장별로 ①, Û을 1set로 제출
- ※ 공동도급공사의 하도급인 경우 해당 공사의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추가 제출

3 재무지원 인정유형 삭제 및 신설

□ 변경 내용

재무지원 인정유형	변경전(2021년 평가)	변경후(2022년 평가)
협력업자에게 업체당 하도급대금외 1백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(기자재 등)을 지원한 경우	인 정	불인정(삭제)
동반성장펀드·상생펀드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으로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(은행과 협력업사에 대한 대출 협약체결, 지급보증 등 포함)한 경우, 이자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	-	인 정(신설)

□ 2022년 평가기준

- 재무지원한 협력업자수(또는 비율)를 평가 (배점 : 5점)
 - 협력업체별 아래 ⑦~® 중 한 개의 유형으로 최소 '1백만원 이상', '1회 이상' 재무지원한 협력업자 업체수를 계산
 - 하나의 협력업체와 다수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하나의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업체에 지원된 금액이 '1백만원 이상'이면 재정지원 업체수에 포함

재무지원 인정 유형

- ② 발주자로부터 선급금, 기성금, 준공금 등 공사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않고 1백만원 이상 하도급대금을 현금성결제수단으로 선(조기)지급한 경우
- ① 전자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인지세액 중 70%이상을 신청사가 부담한 경우로서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의 인지세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
-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 (합계)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

하도급계약액	지원 인정금액
1천만원 이상	6만원
3천만원 이상	12만원
5천만원 이상	20만원
1억원 이상	50만원
2억원 이상	100만원

- ⑤ 하도급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협력업자별 수수료 등 지원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
-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인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총 하도급계약액 기준으로 지원 인정 금액이 1백만원 이상 경우 대표사 및 구성사 모두 재무지원 인정

하도급계 약액	지원 인정금액
4천만원 이상	12만원
5천만원 이상	20만원
1억원 이상	50만원
2억원 이상	100만원

- ② 동반성장펀드*·상생펀드* 등을 통하거나 신청사 자금으로 협력사의 대출을 지원(대출이자 지원, 무이자 대출지원)한 경우, 이자 지원금액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
 - * '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' 제20조의5에 따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 (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기금 집행·관리